

변경내용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펀드코드 |
|-------------------------------|-------|
| 대신 퇴직연금6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 | 67901 |

2. 주요변경내용

① 투자설명서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9.74%, 4등급->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모형사용) 17.55%, 4등급)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② 간이투자설명서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3. 변경 대상 서류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4. 변경시행일 : **2024.06.13.**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 항 목 | 정정사유 | 정정전 | 정정후 | | | | | | |
|---|--|---|---|------------|----------------|----------------|--|--|---|
| 문서전반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증권은 ---<중략>---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u> <u>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u> , 특 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 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 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u> <u>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u> | 집합투자증권은 ---<중략>-----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u> <u>아니하며</u> ,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 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u>보호되지 않습니다.</u> | | | | | | |
| 요약정보 | | | | | | | | | |
| - 투자비용 -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단위:%) -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 | - | 결산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 | | |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 한사항 | 업데이트 | -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 | | | |
| 제2부. 10.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표준편차->Var) 4등급 유지 | <변경전 1> | <변경후 1> | | | | | | |
|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기업공시서식개정사 항 반영 | 나. 환매 (1) ~ (8) <생략> <신설> | 나. 환매 (1) ~ (8) <현행과 동일> (9)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중도환매 불가</td> <td>중도환매시 비용 발생</td> <td>중도 환매 허용</td> </tr> <tr> <td></td> <td></td> <td>○</td> </tr> </table> | 중도환매 불가 |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 중도 환매 허용 | | | ○ |
| 중도환매 불가 |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 중도 환매 허용 | | | | | | | |
| | | ○ | | | | | | | |
|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업데이트 | - |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금액 및 내역포함 | | | | | | |
| 제2부.14.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③ <u>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u> <u>과세체계의 다양성</u>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 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 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 | ③ <u>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u>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 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또한 | | | | | | |

| | | | |
|---|------|---|--|
| | | <p>한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u>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u> <u>(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u></p> <p>♣ <u>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p>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u>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u>(2024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부터 적용). <u>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u></p> <p>※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p>제 3 부. 1.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판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p> | 업데이트 | - | <p>결산 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증권대차거래로 인한 기타수익, 기타비용, 거래비용, 매매회전을 포함</p> |
|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p> | 업데이트 | - | <p>기준일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 <p>제5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p> | 업데이트 | - |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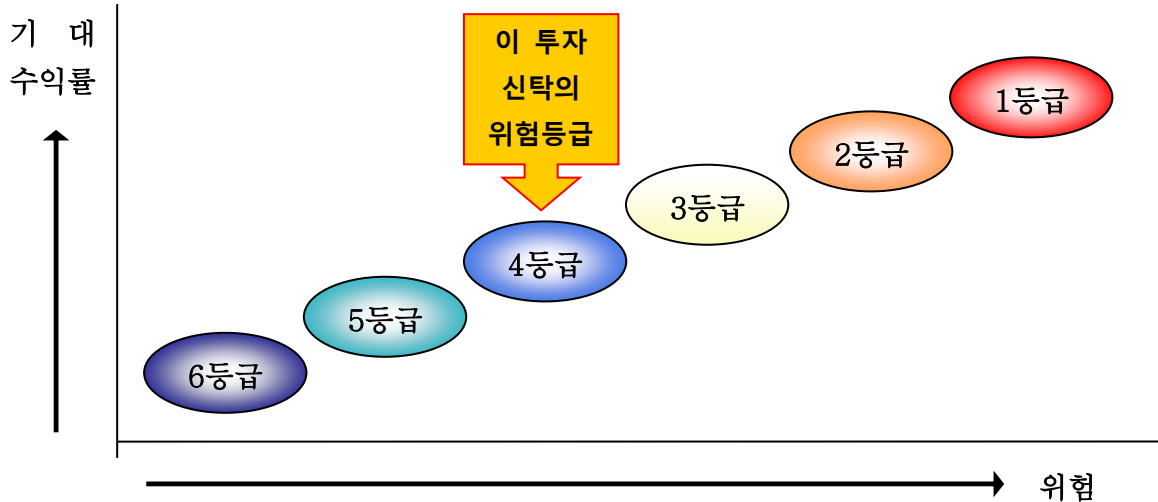
<변경전1>

가.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고위험자산인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40%~60%의 수준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9.74% 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 및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퇴직연금6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은 장기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사업단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수익률의 변동성(표준편차)은 투자기간 동안 펀드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써,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음을 의미합니다.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 변경일 | 변경전 위험등급 | 변경후 위험등급 | 위험등급변경사유 |
|-------|----------|----------|----------|
| <추 가> | | | |

<대신자산운용(주)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 등급 | 1(고위험) | 2 | 3 | 4 | 5 | 6(저위험) |
|------|--------|-------|-------|-------|------|--------|
| 표준편차 | 25%초과 | 25%이하 | 15%이하 | 10%이하 | 5%이하 | 0.5%이하 |

- 주1) 이 펀드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점검하고 변경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2)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하여 이를 상회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고, 표준편차 값이 하위 등급의 상한치보다 낮고, 운용전략 등을 고려할 때 하위 등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 등급을 하향합니다. (다만,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이 156주 이상인 경우에는 156주간만을 계산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이 155주인 경우 155주간만으로 적용)
- 주3) 추후 매 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모자형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5)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6)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재간접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7)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현저히 달라져 과거 수익률 변동성이 현재 펀드의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에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주8) 레버리지ETF, 인버스 ETF,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경우에는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 주9)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된 결과, 그 값이 위험등급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험등급이 매년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덜 위험한 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높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후1>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고위험자산인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40%~60%의 수준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하 'VaR')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17.55%로, 4등급(보통 위험)에 해당합니다.

수익자는 주식 및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퇴직연금6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혼합]은 장기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사업단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 위험등급 | 1 등급 (매우높은위험) | 2 등급 (높은 위험) | 3 등급 (다소높은위험) | 4 등급 (보통위험) | 5 등급 (낮은 위험) | 6 등급 (매우 낮은위험) |
|-----------|------------------|-----------------|------------------|----------------|-----------------|-------------------|
| 97.5% Var | 50%초과 | 50%이하 | 30%이하 | 20%이하 | 10%이하 | 1%이하 |

주 1)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주 2)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 값 0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 변경일 | 변경전 위험등급 | 변경후 위험등급 | 위험등급변경사유 |
|-------------|----------|----------|--|
| 2024.06.13. | 4등급 | 4등급 |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표준편차 → VaR) - 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 손실예상액(VaR)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20%이하 |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 항 목 | 정정사유 | 정정전 | 정정후 |
|---|----------------------------------|---|--|
| 문서전반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p>집합투자증권은 ---<중략>---</p> <p>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u> 공사가 보호하지 <u>아니하며</u>,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u>공사가 보호하지 <u>않습니다</u>.</p> | <p>집합투자증권은 ---<중략>-----</p> <p>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아니하며</u>,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습니다</u>.</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비용 -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단위:%) -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 | - | 결산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